<간이투자설명서>

키움파이어니어ESG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펀드코드: 53657]

투자위험등급 : 5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키움투자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 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작성기준일: 2025.01.19)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 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키움 ESG 증 권 모투자신탁 [채권]'에 투자하여 금리 및 시장 상황의 변동성에 따른 금리변동위험, 신용등급 하락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키움파이어니어ESG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 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국채, 통안채, 특수채, 회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키움 ESG 증권 모투자신탁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투자하여 이 자소득 및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기업의 재무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등 기업의 사회책임 및 지속가능성(이하 "ESG")을 고려합니다. ESG평가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ESG리스크를 관리하여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차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모자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단위: %)				_ / _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합성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총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 비용	≐■ 1년	2년	3년	5년	10년
	퇴직연금(C)	없음 0.370	0.200	0.39	0.38	4 39	81	124	218	495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퇴 직연금 (C- e)	없음 0.270	0.100	0.25	0.28	4 29	60	92	161	366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합성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모투자편드 보수•비용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종류C형(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종류C-e형(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이 미설정 클래스인 관계로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을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단위: %)	클래스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2024.01.20 2025.01.19	~ 2023.0		최근 3년 2022.01.20~ 2025.01.19	최근 2020.01 2025.0	1.20~	설 성 이	_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직연 금(C)	2019.09.20	7.24 5.93			3.06	1.65		2.6	65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퇴직연금 (C-e)	2019.11.06	7.35	6.04		3.17	1.7	75	1.8	35
	비교지수	2006.01.03	7.26	5.	61	3.04	1.6	67	3.8	36

2006.01.03

수익률 변동성

2.77

3.43

4.28

3.64

2.56

주1) 비교지수: KAP종합채권지수 X 10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 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 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동종집합투자기구연평균수익률 운용현황 (국내채권형, 단위:%) 운용경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 운용규모 년수 최근 최근2 최근 최근2 기구수 (억원) 1년 년 1년 년 4년 1개월 *ESG 펀드 운용경 수석 7.23 김용희 1985 27 13 873 5 97 5 91 4 87 력: 3년 9개월 운용전문인력 (2021.04~현재)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2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 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 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 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 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 투자자 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ㆍ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 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 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 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투자원본에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대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 손실위험 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 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무증권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무증권등도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무증권등의 금리변동에 따라 채무증권등의 가 주요투자 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등의 가격 상승에 위험 금리변동위험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 권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으로 신용등급 하 락 혹은 부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편입한 채권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 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변동은 없을지라도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인해 가치에 신용위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전체적으로 신용위험에 대해 민감하게 될 경우 개별 종목의 신용위험 변동 과는 별개로 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				
	투자위험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환매조건부채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				
	권 매도 및 운	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				
	용에 대한 위	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				
	험	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				
		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액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ESG 관련 평가등급이 양호한 기업의 채권 및 어음과 ESG 목적 발행					
		권에 주로 투자합니다. 다만, ESG 관련 채권 및 어음의 부재 또는 유통물량이 적을 경				
	ESG 채권 등	우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ESG 채권 및 어음은 발행 특성상 특				
	투자위험	지 기계				
	' ' ' ' '	분산투자가 잘 이루어진 투자신탁에 비하여 클 수 있으며, 보다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SG 평가등급					
	ESG 평가등급 구사군용 중 구사내장 기업에 ESG관단 구성적 이유의 일정으로 평가등급이 변경 위험 있으며, 이는 투자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 오늘 이들 수 있다면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				
		대답한 영급필도구의 세				
	을 적용	기에 공고되는 기문가락				
매입방법		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금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				
		당 다입한 영업일로부터 기계 이 한다 함께 대급을 지급				
		+2)에 공고되는 기준가 환매방법 ·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격을 적용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				
	72 70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금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				
		하여 환매대금을 지급				
판매회사	진 하트 자연 자()	www.kiwoomam.com)/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				
	산정방법	기구 총좌수				
기준가	LOOH	기기 용기기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1241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 판매회사 · 한국금				
	공시장소					
		용투자현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 kofia or kr)에 게시한니다				
		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박생한 이익에 대하여 워처 장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여금 수령시 관련세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				
	· 투자신탁에서 법에 따라 세금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 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 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 투자신탁에서 법에 따라 세금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 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				
	· 투자신탁에서 법에 따라 세금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 남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 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 투자신탁에서 법에 따라 세금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 남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 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				
	· 투자신탁에서 법에 따라 세금 구분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 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 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 투자신탁에서 법에 따라 세금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 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 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액부터 적용)				
	· 투자신탁에서 법에 따라 세금 구분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 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 투자신탁에서 법에 따라 세금 구분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 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합니다.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				
과세	· 투자신탁에서 법에 따라 세금 구분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 라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 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액부터 적용)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합니다.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과세	· 투자신탁에서 법에 따라 세금 구분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 경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합니다.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합니다.				
과세	· 투자신탁에서 법에 따라 세금 구분 세액공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 음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합니다.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합니다.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과세	· 투자신탁에서 법에 따라 세금 구분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 경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합니다.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합니다.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과세	· 투자신탁에서 법에 따라 세금 구분 세액공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 음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합니다.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합니다.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과세	· 투자신탁에서 법에 따라 세금 구분 세액공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 음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액부터 적용)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합니다.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합니다.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과세	· 투자신탁에서 법에 따라 세금 구분 세액공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 응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합니다.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합니다.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과세	· 투자신탁에서 법에 따라 세금 구분 세액공제 과세이연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합니다.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합니다.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다만,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연간 1,500만원 이				
과세	· 투자신탁에서 법에 따라 세금 구분 세액공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음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합니다.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합니다.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다만,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 가능하며,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초과하는				
과세	· 투자신탁에서 법에 따라 세금 구분 세액공제 과세이연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음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합니다.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합니다.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다만,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 가능하며,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초과하는경우에도 종합과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단, 분리과세				
과세	· 투자신탁에서 법에 따라 세금 구분 세액공제 과세이연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 응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합니다.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합니다.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다만,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 가능하며,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초과하는경우에도 종합과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단, 분리과세선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과세	· 투자신탁에서 법에 따라 세금 구분 세액공제 과세이연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음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합니다.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합니다.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다만,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 가능하며,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초과하는경우에도 종합과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단, 분리과세				
과세	· 투자신탁에서 법에 따라 세금 구분 세액공제 과세이연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움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합니다.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합니다.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다만,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경우 「분리과세」로 선택 가능하며,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초과하는경우에도 종합과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단, 분리과세선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통합연금포털 (https://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안내'				

키움파이어니어ESG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및 방법							
집합투자업자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번호 : 02-789-03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kiwoomam.com						
모집기간	효력발성	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5년	02월 13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	류(Class)			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 료	수수료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고, 일정시점이 지나 환매할 경우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판매수수료선취형(A)이 없어, 투자시 수수료미징구(C)형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을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오프라인	판매되는 집합투자	다기구보다 판매수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		
	기타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 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고액거래자가 투기	다하는 용도로 판매	내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 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 공시시스템(dis.kofia.or.kr)
-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kiwoomam.com)
-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kiwoomam.com)